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오염도 검사 기준 이내일 경우 보수교육 면제 횟수 명확화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1)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2)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자가측정 시기 기준 완화

라.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8)

법 준수 혼란 및 국민권익 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

마. 기타(안 제10조의6, 제10조의7, 별지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2호의2~제2호의5·제2호의8·제5호 서식)

-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의 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명으로 명칭 일원화
- 2)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된”을 “된 날 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가 확인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면제한다”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 6시간”을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4시간”으로 한다.

제10조의6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의7제3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2지점	(:) (-)									밀폐
										환기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3지점	(:) (-)									밀폐
										환기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	(:) (-)									밀폐
										환기
										()
	입주예정자 입회 여부									
평균										밀폐
										환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성 명”을 “제조회사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상 호(명 칭)”를 “제품명(모델명)”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4. 3. 11.>

(앞 쪽)

시험확인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

1. 시료내용

제품명		제조회사명(대표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시료채취 일시		시료채취장소	
시료채취 방법			
대상 건축자재 [] 접착제, [] 페인트, [] 실란트(sealant), [] 퍼티(putty), [] 벽지, [] 바닥재, []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2.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판정	
기준 초과항목	

나. 항목별 검사결과

검사항목	기준	시험 결과

3. 유효기간 :

시 험 기 관 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의4서식 제6호 중 “유효기간:”을 “방출시험확인 제품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효기간 :

별지 제2호의5서식 중 “(mg/m² · h)”를 각각 “(mg/(m² · h))”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바랍니다”를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제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

시 공 자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동주택 현황	주소								
		공급세대	세대별 규모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측 정 자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 측정계획

구분	측정 일시 (시간)	측정 지점 (동-호수)	거실 방향	측정 항목						
				폼알데 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1지점	(:)	(-)								
2지점	(:)	(-)								
3지점	(:)	(-)								
...	(:)	(-)								
...	(:)	(-)								
...	(:)	(-)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주택 시공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거실방향란은 8방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예: 남동향, 남남향)
- 측정항목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측정항목 중 측정하는 항목에 대해 ○를 기재합니다.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입회 희망일 (년/월/일)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근거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입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공동주택 시공사 귀하

첨부서류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측정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제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자	상 호(사업장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개선계획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다중이용 시설현황	업 종	
		시설명	규모(면적) (m²)
	개선명령 사유		
	개선기간	개선완료 예정일	
개선대책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명세(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제출자

→

접 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건과)

→

검 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건과)

→

결 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보건과)

210mm×297mm[백상지 80g/㎡]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지정 20일 변경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지정서 재발급사유	지정서의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 및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정 신청의 경우 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1부 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업무수행 계획서 1부 다. 별표 6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 1부. 2. 지정 변경 신청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 ----- ----- ----- ----- ----- ----- -----.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1. ----- ----- 된 날 또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가 확인된 ----- --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 -----. ----- ----- ----- -----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② ----- ---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② (생략)

4시간---.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업자등록

증명(해당 사업자등록증명에 포

함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사업자등록증명-----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

---.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생략)
<신 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

③ -----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

에 따른다. <u><단서 신설></u> 1. ~ 3. (생략) <u>⑤</u> · <u>⑥</u> (생략)	----- . <u>다만, 환경부장관이</u> <u>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다고 인</u> <u>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로</u> <u>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u>⑥</u> · <u>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